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2다74671 임금
원고, 상고인 김○○
서산시 ○○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
담당변호사 김병주, 도재형, 여치현, 위대영
피고, 피상고인 ○○ 주식회사
서울 중구 ○○
대표이사 배○○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
담당변호사 이정환, 강한
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2. 11. 20. 선고 2002나26596 판결
판 결 선 고 2003. 3. 11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은 상고인이 내세운 이 법원의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고, 이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서 성 _____

 대법관 이용우 _____

주 심 대법관 배기원 _____

 대법관 박재윤 _____